

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1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시장직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에
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
등의 직무를 규정함(안 제2조~제3조)
- 나. 인수위원회 회의의 소집, 의결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근무, 예산 및
활동에 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의 수당 관련 사항을 규정함(제7조)
- 마. 인수위원회의 주요 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105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22. 1. 27.~2. 16.) 결과: 의견없음
 - (2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직원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,

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,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비용(자문료, 자문회의 운영 등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
*2022년 예산액: 86,000천원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이영 (02-2133-6618)